

심사대상 : 작업장, 시설물

#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재정경제부



## 심사위원

성명	서명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백 동 현	백동현	○	○				○
신 지 훈	신지훈	○	○				○
김 정 렬	김정렬				○		
조 두 용	조두용				○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I 기관 현황

기관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장 (25년말 기준)	남태헌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96-90											
설립목적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지시설 조성·운영 및 서비스제공</li> <li>○ 산림교육·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li> <li>○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및 교육</li> <li>○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 및 연수</li> <li>○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교류·협력</li> </ul>											
기관유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주무부처	산림청								
심사유형	II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60%	비해당	40%	비해당						
안전관리 등급	'25년도(예비)				'24년도				'23년도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종합	역량	수준	성과
	3	3	4	2	-	-	-	-	-	-	-	-

## II 총 평

- '25년 기관의 종합 등급은 3등급으로 심사되었다. 올해 처음 등급 심사를 받아 전년 대비 비교는 어려우나, 안전역량은 3등급, 안전수준은 4등급, 안전성과는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기본은 갖추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
- **(안전역량)** 3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안전보건경영 투자',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지표가 D등급으로 확인된 반면, 나머지 지표는 C등급 수준으로 심사되어 관련 분야의 보완 시 등급 향상이 기대된다.
- **(안전수준)** 4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작업장' 분야와 '시설물' 분야가 모두 D등급으로 취약하게 심사되었다. 특히,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일부 지표가 E등급으로 확인되어 관련 분야의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안전성과)** 2등급으로, 사고사망자 발생이 없었다.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가 모두 C등급으로 심사되어, 기본적인 안전성과 관리 기반은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활동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경우 성과 스즈이 추가 하사도 기대된다

### Ⅲ

## 범주별 개선 필요사항

### ○ 안전역량

#### 개선 필요사항

1.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경영환경과 전략목표에 부합하도록 정기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체계의 제도화 필요
2. 전 사업장의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한 본사 차원의 실적관리 강화와 부적합·개선 대상에 대한 후속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3. 본원 중심의 조직 강화에 더해 치유원·숲체원 등 산하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조직의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며, 안전보건 업무담당자에게 직책·업무분장 등 명확한 권한과 역할 근거를 부여하여 현장 실행력 제고 필요
4. 전담조직 및 수급업체 대상 교육이 수요조사와 성과분석에 기반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중장기 역량개발계획 마련 필요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건 분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수급업체 의견이 공식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내실화 필요
6. 현재 수급업체 지원이 자회사 중심 또는 교육 위주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일반 수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하여 위생·휴게시설 등 현장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범위 확대 필요
7. 적용범위에 포함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등 규정 내용이 실제 절차서와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여 규정과 하위 절차 간 정합성 제고 필요
8. 전년도 수준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 분석과 이행일정·필요예산을 포함한 후속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며, 기관 비전·목표·추진과제 수립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수렴과 환류 절차 강화 필요
9. 기관 안전경영계획과 본원·부서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며, 과제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중간점검, 상시 모니터링, 달성률 측정이 가능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10. 책임경영계획상의 안전예산이 세부 추진과제 및 부서별 집행예산과 명확히 연계되도록 관리하고, 과제별 이행 달성률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과 효과를 점검·분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11. 위험성평가 교육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일부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로 보완하고, 관리감독자의 담당자 교육 이수 및 실행역량 강화 체계화 필요

## 개선 필요사항

12.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시 청취조사뿐 아니라 순회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을 정비하고,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밀폐공간, 과거 개선항목 등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정기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성·중대성 판단기준과 허용 불가능 위험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평가기준 구체화 필요
13. 작업환경측정 및 사무실 공기질 관리 범위의 산하조직 확대와 작업환경측정 관련 사항·결과의 수급업체 공유체계 보완 필요
1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요관찰자 상담 실시 여부와 결과를 본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취합·관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
15.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기 파악과 법정 이수기한 내 교육 완료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지사 대면교육의 이행점검 절차 보완 필요
16. 안전신고·제안·아차사고 발굴 등 참여형 제도의 지사 차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과 제도 안내·홍보 강화를 통한 직원 자발적 참여 제고 필요
17. 비상조치계획에 시설별 비상대피로·집결지·대피절차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관련 매뉴얼 간 정합성 제고와 보행약자 대피지원 방안의 시나리오·훈련 구체화 필요
18. 치유의 숲 등 소규모 시설의 자연재해·중대재해 비상훈련 대상 포함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운영을 위한 본원 차원의 가이드·공유체계 강화 필요
19. 재해조사 결과가 유사 위험장소에 대한 수평 전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 고도화 필요
20. 수급업체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구체성·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와 미흡 사항에 대한 실질적 보완요구 체계 마련 필요
21. 상주·비상주 업체뿐 아니라 단발성 작업·공사까지 포함한 도급사업 현황의 체계적 관리와 수급업체별 작업 특성·위험도를 반영한 점검표·관리항목 정비 필요
22. 특별교육 대상 작업 및 교육 이행의 계약 단계 관리 강화, 단기 수급업체를 포함한 휴게시설·위생시설 지원과 의견수렴의 공식 절차화, 후속조치 및 차기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환류체계 강화 필요

## ○ 안전수준

### 개선 필요사항

#### [작업장]

1. 비상발전기실·전기실·소방펌프실 등 고위험 작업공간의 비상조명설비 보완과 감전주의 표지 등 안전표지의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관리 강화 필요

## 개선 필요사항

2. 휴게시설의 담당자 지정 및 정기 점검체계 마련을 통한 쾌적성·안전성 관리 강화와 실제 취급물질의 유해성·위험성·취급상 주의사항을 반영한 MSDS 교육의 실효성 제고 필요
3. 예초기·컴프레셔 외 발전기·동력운반차 등 보유 설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계·기구 목록을 전면 정비하고, 모든 장비가 정기 점검·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리체계 보완 필요
4. 발전기 등 설비의 자체 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도록 점검일지 운영이 필요하며, 예초기 등 반입 장비에 대해서도 작업 전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작업허가서 또는 TBM 일지에 반영되도록 관리절차 보완 필요
5. 일부 분전반의 충전부 노출에 대해서는 폐쇄형 외함 설치나 시건 등 절연 조치 강화가 필요하며, 지하 저수조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 걸이설비 등 추락방지용 부착 설비 설치를 통해 고위험 작업의 물리적 안전조치 보강 필요
6. 산소농도측정기 등 밀폐공간 작업 관련 장비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정기 점검·검교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 강화 필요
7.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에 측정자, 작업시간, 측정 위치, 측정 횟수 등 필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실제 작업조건에 맞는 측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수준 제고 필요
8. 고소작업·밀폐공간작업 등 위험작업의 특성이 작업허가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체크항목을 보완하고, 가스농도 측정자·측정시점·반복 측정 여부 등 작업 중 안전확보에 필요한 정보의 명확한 기록·관리 필요
9. 작업중지 요청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 실적이 없는 만큼, 기관 근로자와 수급업체 대상 제도 안내·교육 강화와 함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 작업중지 요청이 가능한 현장문화·운영체계 정착 필요

### [시설물]

10.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 필요
11. 시설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
12.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검증체계 규정화 필요
13. 보수·보강 이력관리의 구체적인 규정(이력관리 대상 용역, 기준, 방법, 주체, 기한, 이행점검 및 미적정 관리에 대한 조치 등) 마련
14. 시설물 보수·보강 이력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15.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과정 및 제도개선 노력 필요

---

### 개선 필요사항

16. 전문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 필요
  17. 시설물 회복 및 복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 

### ○ 안전성과

---

### 개선 필요사항

1. 안전경영책임보고서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과제·지표·목표치, 실적·달성률·미진사유·개선대책이 1:1로 명확히 연결되도록 정비하고, 과제 누락·변경 사유 명확화와 미진 항목에 대한 책임부서·기한·재점검 중심의 환류체계 강화 필요
  2.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대상을 주요 보직자까지 확대하고 지표 설정 근거와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체심사도 책임계획의 추진과제·세부목표와 직접 연계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독립성·전문성 강화 필요
  3. 안전인식 조사, 안전보건마일리지, 안전문화 네트워크 등 종사자 대상 프로그램의 참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감독자를 통한 내용 확산과 참여 독려 등 운영 강화 필요
  4. 힐링포레스트 프로그램, 안전패키지 지원, 계절별 안전점검 연계 활동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대국민 안전문화 사업의 캠페인·홍보 연계 강화와 민간 산림복지 제공자·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및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 IV 심사 결과

구 분		등급
종합등급 (1,000점)		3
① 안전역량 (300점)		3
② 안전수준 (350점)		4
위험요소별 등급	작업장	D
	건설현장	비해당
	시설물	D
	연구시설	비해당
③ 안전성과 (350점)		2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① 안전역량 배점 및 등급		300	3
	1. 체계 역량	소 계	140	C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30	C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C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D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20	C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20	D
	2. 관리 역량	소 계	160	C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30	D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20	C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20	C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20	C	
	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70	C	
안전수준 [350점]	②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분야별 가중치 적용)		350	4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350	D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60	C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D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D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80	C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등급
<b>안전수준</b> <b>[350점]</b> ※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2. 건설 현장	<b>【건설현장 안전관리】</b>	350	비해당
		①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체계	20	비해당
		② 건설공사의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50	비해당
		③ 건설공사의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80	비해당
		④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25	비해당
		⑤ 건설안전 환경 조성	70	비해당
		⑥ 안전시공 작동 수준	105	비해당
	3. 시설물	<b>【시설물 안전관리】</b>	350	D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20	B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20	B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40	A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90	E
		⑤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30	A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40	E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40	E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70	C	
	4. 연구 시설	<b>【연구시설 안전관리】</b>	350	비해당
		①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조성	50	비해당
		② 연구실 연구장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③ 연구실 전기설비 위험방지	40	비해당
		④ 연구실 시약류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⑤ 연구실 화재 예방	40	비해당
		⑥ 연구실 고압가스 취급 및 보관	50	비해당
		⑦ 연구실 연구환경 및 연구자 보호	40	비해당
⑧ 연구실 생물체(LMO) 감염 예방	40	비해당		
<b>안전성과</b> <b>[350점]</b>	<b>③ 안전성과 배점 및 등급</b>		<b>350</b>	<b>2</b>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결측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C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40	C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50	A

※ 등급부여 기준(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구 분	총 점	1등급(A)	2등급(B)	3등급(C)	4등급(D)	5등급(E)
배 점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

# **1 「안전역량」 범주 심사**

---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 1. 체계역량

##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기관'이라고 한다.)의 기관장은 '선제적 안전보건 실행'을 기치로 '안전·상생·고객 중심'의 운영을 경영철학으로 삼아 기관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전사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4개 사업장 및 자회사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인정 실적이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기관의 중점 분야가 위험성평가 수준 향상에 있는 만큼 더 많은 사업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매년 초 개최되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과 매월 실시하는 '안전일터 조성의 날'은 기관장의 강력한 안전 경영 의지를 전파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기관장의 철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대사고 ZERO를 위한 위험 감소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의 중점 과제와 연계하여 전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실적 관리가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기관은 안전보건 조직 및 구성원의 업무충실도를 위해 기관장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계층별 관리자에 대해 반기별 업무 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자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소속기관에 대해 포상하는 등 구성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와 병행하여 반기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업무 수행 평가와 포상제도는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거나,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부적합 또는 개선 판정을 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단순 보완 지시를 넘어 구체적인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소속기관 간 안전관리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경영진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연 4회), 유사 공공기관 간담회, 안전보건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를 정기 운영하여 전사 안전 문제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안전활동 현장평가'를 통해 소속기관의 실행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근로자와의 소통 수준을 높이고, 전사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노사 간 내부 소통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및 지역사회와의 안전보건 소통 수준은 보완의 여지가 있다. 고객 접점에서의 안전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급업체와의 협력 관계에서 도출된 현장 현안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교육적 지원으로까지 폭넓게 이어져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 창구의 다각화를 통해 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기관장은 기관 시설을 찾는 외국인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세계화 전략과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자 '25년 하반기에 'KOSHA-MS'에서 'ISO 45001'으로 체제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ESG 중심의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가치 실현 및 기관의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이행점검을 연 2회 실시함으로써 전사 안전관리 체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기관장은 안전경영위원회를 계획보다 추가 실시하여 ISO 45001 인증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월간 업무소통회의를 통해 전사적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경영진의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이행 사항에 대해 예산과 비용을 즉각 투입하여 조치를 완료한 점은 현장 안전 경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25년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적합성 검토가 미 실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과거 몇 년간 신규 의견 미도출을 사유로 '25년 방침 검토를 미 실시한 점은 조직의 유연한 대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ISO 45001 체제 전환 및 외국인 수요 증가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정례화하여 방침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

방침이 단순한 선언적 문구에 머물지 않고, 기관의 전략 목표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환류 체계(PDCA)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경영환경과 전략목표에 부합하도록 정기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체계의 제도화 필요
2. 전 사업장의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한 본사 차원의 실적관리 강화와 부적합 개선 대상에 대한 후속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기관의 조직은 3본부 3실 1팀 1센터, 2치유원, 7숲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 규정 및 시행세칙」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업무분장에 따라 부원장 직속의 안전총괄실에서 안전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다. 안전총괄실 전담인력은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등을 보유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기능 관리를 위하여 'FOWI 미래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은 조직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고, 그 중 안전경영팀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는 노력과 더불어, 기관장의 확고한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통해 안전보건 인력을 '25년 5명에서 '26년 6명으로 증원하고 안전경영실로 격상한 과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본원 조직과 더불어, 산하조직 전반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직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길 바란다.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안전보건조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거 본원 및 산하조직의 대표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직무교육을 주기에 맞게 이수하고, 관련 법에서 규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법정 선임 의무는 없으나, 안전보건 업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본원과 치유원, 숲체원에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여 직무교육 이수 기회 제공을 통해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하조직에는 안전보건 업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본원 전담조직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업무가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향후 산하조직의 담당자들이 직책과 업무분장 등 명확한 권한 부여를 통해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기관은 '2025년도 안전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무교육, 역량강화교육, 전문화 교육 등 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수급업체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상주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테마파크, 안전체험관에서 기관과 수급업체가 함께 진행한 안전·재난 역량강화 체험교육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수급업체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수요조사와 성과분석 등을 통한 발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원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전문성 등 개별 능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지속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바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은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계획'을 통해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 위원회 안건 등 세부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관은 원장, 부원장,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측과 권역별 근로자대표로 위원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교육 기본계획,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계획,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심의·의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분기별 참석자를 확인한 결과 보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건강관리 등 보건 분야 안전을 충실히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 바란다. 또한, 수급업체 의견수렴의 공식 채널인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의견 청취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본원 중심의 조직 강화에 더해 치유원·숲체원 등 산하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조직의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며, 안전보건 업무담당자에게 직책·업무분장 등 명확한 권한과 역할 근거를 부여하여 현장 실행력 제고 필요
2. 전담조직 및 수급업체 대상 교육이 수요조사와 성과분석에 기반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중장기 역량개발계획 마련 필요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건 분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수급업체 의견이 공식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내실화 필요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 경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예산편성 집행심의회 운영 및 이사회 의 최종 의사결정을 거치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25년에는 세 차례의 집행심의회를 운영하여 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현장 안전경영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5년에는 안전 물품 지원을 위한 2,5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현장의 안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측면에서는 집중호우 및 풍수해, 산불 조심 기간, 명절 및 계절별 취약 시기 등 시기별 현안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다.

수급업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원장 주도의 경영진 참여형 지원 활동을 통해 위생·휴게 시설 확충 및 혹서기 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다만 현재 지원 예산이 자회사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 수급업체 지원은 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바, 향후 수급업체 및 이해관계자의 전용 시설 개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관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5년 하반기에는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및 관리 검토 주체를 기존 부원장에서 원장으로 격상하여 안전 경영의 실행력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25년 상반기는 부원장이, 하반기는 원장이 직접 검토를 수행하였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현재 수급업체 지원이 자회사 중심 또는 교육 위주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일반 수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하여 위생·휴게시설 등 현장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범위 확대 필요

## 【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 심사의견

기관은 2019년 안전보건활동의 최상위 규범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25년 6차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반영하여 규정을 최신화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수준평가 환류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에 맞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및 공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실시 시기, 기록·보존 조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경영을 위해 본원과 소속기관 9곳(치유원 2곳, 숲체원 7곳)은 '25년 11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최초로 취득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매뉴얼과 절차서, 지침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속기관 4곳과 자회사 '포이파트너스'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25년 기관 전체의 안전보건활동 역량 집중이 돋보인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총칙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체계, 재난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범위는 임직원, 시설, 수급인·관계수급인·진흥원 도급 건설공사 근로자 및 시설 이용 고객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시설이용 고객 등 약 50만명 규모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적용범위에 포함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는 상시 평가뿐만 아니라 유해·위험 요인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 수시평가를 추가하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서와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화가 요구된다.

기관의 안전 관련 법의 반영 수준을 확인한 결과, '25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9개 관련 법규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법규검토 및 준수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제·개정 내용도 성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적용 법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토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종사자와 관계자에게 게시·공람·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하여 고령자 근로자를 위한 ‘시니어 안전지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고령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기능 저하 등을 고려하여 취약 작업과 과도한 연속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작업 전에 개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보호구 착용과 함께 TBM 활동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조직별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그 밖의 주요 사항의 변경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규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절차서·지침서에 신속히 반영하고, 조직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적용범위에 포함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등 규정 내용이 실제 절차서와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여 규정과 하위 절차 간 정합성 제고 필요

##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경영계획 수립에 있어서 ‘모든 종사자 및 국민이 안전한 산림복지 실현이라는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절차」에 근거하여 5개 추진 분야와 14개 실행과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세부 과제별 계획수립에 있어서 상세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과 세부 업무 추진체계를 위해 성과지표 설정, 추진 대상 구체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관은 목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재해현황분석의 경우 기관은 안전사고 범위를 이용객 안전사고와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사건사고 분류 기준을 반영한 발생동향, 재해현황 분석, 재해분석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환류 및 행정조치 등을 경영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진 과제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관이 수립한 중장기 경영목표의 전략과제 중 ESG부분에서 ‘재해·안전·보건 통합관리체계’ 고도화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다.

기관은 전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 분석, 세부추진 목표 선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조치 예정 완료일, 집행예산 배정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관련 부서의 해당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강화·개선과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을 통한 환류를 안전경영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였다.

반면에 전년도 지적사항 중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사적 시스템 도입·운영’에 대해 전산화 고도화 작업 병행으로 미실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관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전년도 수준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상세 분석과 과제 분류로 이행 가능한 일정 고려와 함께, 이행시 필요예산에 대한 편성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경영계획 수립에 있어서 본원 및 부서별(지역별)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은 확인되었으나 안전경영계획 상의 기관의 비전, 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내·외부 직원의 의견제시 및 전사 및 부서별 회의 및 세미나

등의 폭넓은 논의 과정과 전년도 과제 이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환류를 위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확대 마련이 필요하다.

기관은 안전경영계획 이행점검을 위해 중대재해, 산업재해, 안전사고 항목별로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내·외부 현안 사항 파악과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안전경영 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서에 따라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은 고려사항, 반영사항, 수립 절차도 제시되어 있다.

다만, 기관은 안전경영계획의 이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경영계획의 추진 과제별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며, 부서별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추진계획 작성 시 경영계획상의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 반영을 통한 안전경영계획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 또한, 상세 추진일정 수립 시 중간점검을 통한 달성률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특히 본원 및 부서별 달성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이행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및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 이행완료 여부 측정보다는 이행과정에 대한 중간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수행도 측정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기관은 실행 과제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책임경영계획상의 안전예산은 수립되어 있으나 상세 추진 과제별 예산과 부서별 집행예산 수립과 이에 대한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며 과제별 이행 달성률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수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체계 고려가 필요하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전년도 수준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 분석과 이행일정·필요예산을 포함한 후속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며, 기관 비전·목표·추진과제 수립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수렴과 환류 절차 강화 필요
2. 기관 안전경영계획과 본원·부서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며, 과제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중간점검, 상시 모니터링, 달성률 측정이 가능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3. 책임경영계획상의 안전예산이 세부 추진과제 및 부서별 집행예산과 명확히 연계되도록 관리하고, 과제별 이행 달성률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과 효과를 점검·분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2. 관리역량

###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 전 단계에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 결과 공유 및 활용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라 '25년 위험성평가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안전관리자, 담당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역량을 강화하였고, 기관별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해 위험성평가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위험성평가 과정에서는 기관별 위험성평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위험 수준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였다. 또한, 이행점검도 철저히 수행하여 산림복지시설, 수급업체, 발주 현장 등에서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점검 및 조치를 시행하여 현장 안전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5년 2분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계획의 적합성을 확보하였고, 위험성평가 결과는 문서공람, 그룹웨어 또는 게시판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되고 있다. 또한, 매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과 TBM 활동, 위험성평가 사후교육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교육은 비대면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일부 시간에만 포함되어 실시되었고 이는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교육 효과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교육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수준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세부 업무분장에 따라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수료를 권장한다.

기관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계획은 '25년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각 소속기관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진도 참여해 수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장 작동성 평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관은 내부적인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성평가 수행 과정 중 발견되는 미흡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개선하고 이를 다음 평가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립나주숲체원(이하 '현장'이라 한다)은 자체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절차서」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의 목적, 책임 주체, 수행 절차, 결과 공유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25년도 정기 위험성평가는 해당 절차서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각 구성원에게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였고, 안전관리자는 담당자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에 노력한 바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24년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내부 강사로서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유해위험요인 발굴 단계에서는 '2025년 상반기 국립나주숲체원 아차사고 발굴 및 개선조치 결과 보고'를 토대로 곡성·화순 치유의 숲을 포함한 총 32건의 아차사고를 발굴하였다. 각 사고에 대해 발생 개요, 예상 피해, 개선 대책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였고, 대부분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정기 위험성평가 산출물에 이를 반영한 점은 적절하다.

현장 및 치유의 숲 조직은 별도 평가팀을 구성하였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가 순회점검과 청취조사를 병행하였다. 다만, 곡성 치유의 숲의 경우 사전조사 단계에서 청취조사만 이루어졌고, 순회점검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취조사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 위험 요소나 잠재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절차서 및 위험성평가 고시에 따라 사전조사 시 반드시 순회점검을 포함하기 바란다.

정기 위험성평가표 검토 결과, 일부 기계·기구 및 설비, 화학물질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유해위험 요인이 누락된 경우가 확인되었다. 또한, 화순 체험의 숲 최초 평가 때 발굴된 요인과 이전 평가에서 개선된 항목은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존재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허용 불가능한 위험 요인에는 반드시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개선된 잠재위험 요소도 지속 관리 대상이므로 정기평가 시 누락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발굴 요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과거 평가 결과도 재검토하여 정기평가에 포함하기 바란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정 및 개선대책 마련 과정에 전원을 참여시킨 회의를 개최한 것은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유해위험 요인은 가능성·중대성 추정이 미흡했으며, 허용 불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점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대책 수립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가능성과 중대성 판단 기준 및 허용 불가능 위험성 기준을 절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내부적인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성평가 수행 과정 중 발견되는 미흡 사항을 자체 검토·개선하고 다음 평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란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위험성평가 교육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일부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로 보완하고, 관리감독자의 담당자 교육 이수 및 실행역량 강화 체계화 필요
2.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시 청취조사뿐 아니라 순회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을 정비하고,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밀폐공간, 과거 개선항목 등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정기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성·중대성 판단기준과 허용 불가능 위험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평가기준 구체화 필요

## [2]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와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작업환경측정 지침」에 따라 본원과 소속기관 22개소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산하기관이 작업환경측정 비대상임을 확인하여 이를 공문으로 안내하였다. 한편, 수급업체에는 작업환경측정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협력업체에도 측정 결과를 공유하기 바란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사무실에서 실시한 공기질 측정 결과, 오염물질 농도는 관리기준 이하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본원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무실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 「사무실 공기 관리 지침」을 반영하여 산하 조직까지 관리 범위가 필요하다.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및 화학물질 취급 현황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안내한 결과 전원이 수검을 완료하였다. 또한 협력업체에도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 보건관리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건강관리 범위를 협력업체까지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372명 중 인사이동 및 전보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인원은 모두 수검을 완료하여 건강검진 관리가 양호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수검자는 협약병원 또는 일반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검진 후 1개월 이내에 외부망 이메일로 제출하며, 이를 통해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를 파악하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자는 각 소속기관 안전관리자에게 메신저로 전달되며,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안내된다. 그러나 본원 차원에서 상담 여부나 결과를 공식적으로 취합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기관별로 건강상담 실시율과 결과 보고 방식(내부 결재, 상담 확인서 보관 등)이 달라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후관리 대상자를 파악한 후 체계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직무스트레스는 법적 대상인 차량운전 종사자를 중심으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은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대상자 및 통증 호소자를 파악하여 일부 산하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기관은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통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 관리 대상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바란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작업환경측정 및 사무실 공기질 관리 범위의 산하조직 확대와 작업환경측정 관련 사항·결과의 수급업체 공유체계 보완 필요
2.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요관찰자 상담 실시 여부와 결과를 본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취합·관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

###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 참여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인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노동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년도 교육 추진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차년도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현장 근로자는 법정 교육시간 이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실적은 반기별로 점검되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공문과 이메일을 통해 참여를 안내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24년 상반기 환류 사항으로는 성과 측정 설문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육 평가 과정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기관 특성을 반영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본원 및 소속기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원 수료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 직무 변경, 전보 등 인사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교육은 사유 발생 시마다 실시하여 신규 및 변동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 교육은 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각 소속기관 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며,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거나, 수급업체 관리감독자가 자체 교육을 진행한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화학물질 취급 교육 관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교육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참여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한 결과, 관리자 및 노동자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위험성평가 절차, 주요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공통된 수준의 인식을 보였으며, 기관에서 추진 중인 안전보건

제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은 안전보건 신고·제안 제도를 연중 운영하며, 전년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안내 포스터 및 QR코드를 부착하여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25년도에는 9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되었다. 또한, 안전보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내부 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연간 실적에 따른 포상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은 본사의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준용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반기 1회 온라인 9시간과 지사 자체 대면 교육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감독자 교육은 본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및 신규 채용 교육, MSDS 교육 등은 필요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미이수자에 대해 본부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대면 교육은 안전 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교육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면 교육에 있어 7명의 미이수자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명단 파악은 6월 초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교육은 7월에 실시되어 법정 이수 시점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미이수자 명단을 조기에 확보하고 교육 시행 시점을 법정 기한 내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교육계획 수립 시 지사 대면 교육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장의 안전의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경영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관리자는 기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소속 부서의 위험 요인과 개선 사항,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에 대해 숙지 상태가 양호하였다. 아울러 근로자들도 담당 업무와 관련된 주의사항 및 안전작업절차, 부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적정 수준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제도와 관련하여, 기관은 안전문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안전신고·제안·아차사고 발굴'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자를 포상하는 안전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관에서 운영중인 안전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포상 인원이 적고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라 참여가 위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현장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사 차원에서

별도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기 파악과 법정 이수기한 내 교육 완료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지사 대면교육의 이행점검 절차 보완 필요
2. 안전신고·제안·아차사고 발굴 등 참여형 제도의 지사 차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과 제도 안내·홍보 강화를 통한 직원 자발적 참여 제고 필요

#### [4]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기관의 비상상황 대응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위기관리통합 매뉴얼」,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등에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비상 상황 대비·대응 지침과 비상 대응 교육·훈련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기관리 통합 매뉴얼」에 여름철 폭염 등을 포함한 자연재난, 방화나 테러로 인한 화재 등을 포함한 사회재난, 중대재해 등 발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해 대응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상조치계획에는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야 하는데, 본원의 「위기관리 통합 매뉴얼」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산불·화재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산하 시설별 대피장소 현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원화된 두 매뉴얼을 통합 관리하고, 시설별 비상조치계획에 대상대피로와 비상집결지가 적절히 계획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그리고, ‘비상시 대피장소’가 적정한 위치에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화재확산 시뮬레이터(Rothermel Fire Spread Model, FARSITE 등)’를 활용해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대피장소를 검토하는 방안도 권고된다. 또한, 당 기관 이용객의 약 30%가 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이므로, 비상상황 시 이들에 대한 대피 지원 방안을 비상조치 시나리오에 구체화하여 훈련할 필요가 있다.

본원은 규정과 지침에 따른 비상조치 훈련을 반기별로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고 소속 시설에 대해서는 훈련평가표, 훈련결과보고서, 참가자 명단 및 훈련실시 사진을 포함하여 실시 내역을 취합·관리하고 있어 비상훈련이 형식적이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다만, ‘치유의 숲’의 경우 규모가 2~4명이라는 이유로 자연재해·중대재해 비상조치 훈련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소방훈련만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산하 시설에서 제출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의 경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샘플링 방식의 현장점검으로 내실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각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서 발굴된 조치사항의 경우 Punch List를 작성하여 각 산하 시설에 배포·공유함으로써 점검 노하우를 전파하여 현장점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길 바란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기관의 환경 및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점검사항을 추가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이 표준화된 점검사항 외 자체 발굴한 점검사항 없이 제출하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므로 본원 안전총괄팀에서 시설별 특성을 사전 조사하여 일정 부분 가이드하는 방안도 검토 바란다.

비상시 대비·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의 주기적 점검과 관련하여 기관은 방화문, 소화시설, 경보장치, 비상발전기, 전기시설·배수로 등을 매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을 통해 빈도 높게 점검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된다.

본원 재해조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사고조사 절차」 및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에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넘어짐 재해(25.1.29.)와 관련해서는 재해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 판단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고조사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자체 판단 한 것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경미한 사고를 아차사고로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9조 제3항에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점은 바람직하다.

재해조사는 넘어짐 재해와 같은 단순사고가 많아 재해 원인분석에 따른 근원적대책, 공학적대책 등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넘어짐 사고에 대해서도 재해발생경위와 재해원인, 재발방지조치 등을 기재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다만, 재해조사의 수준 고도화를 위해 추락·끼임·부딪힘 등 사망사고 고위험작업과 관련된 재해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절차」를 참고하여 사고조사 시 유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수평 전개하는 과정을 적극 권고한다.

재해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전년도 재해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은 “25년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안전사고 발생 동향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였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동향, 유형별·연령별·재해유형별 사고발생 현황 및 분석, 안전사고 분석결과 및 대책수립, 환류 등 재해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한 의미있는 과정으로 판단되는바, 지속 데이터를 축적하여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하길 기대한다.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비상조치계획에 시설별 비상대피로·집결지·대피절차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관련 매뉴얼 간 정합성 제고와 보행약자 대피지원 방안의 시나리오·훈련 구체화 필요
2. 치유의 숲 등 소규모 시설의 자연재해·중대재해 비상훈련 대상 포함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운영을 위한 본원 차원의 가이드·공유체계 강화 필요
3. 재해조사 결과가 유사 위험장소에 대한 수평 전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 고도화 필요

##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기관은 시설, 미화, 경비, 식당, 전기실 안전점검, 세탁용역 등에 대하여 도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수급업체 8개소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수급업체 현황은 업체명, 업무형태, 소재지, 계약기간, 근무인원을 포함하여 상주와 비상주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단발성 작업이나 공사는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수급업체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적격수급업체 평가 여부 등 수급업체 안전관리 데이터를 추가 반영하고 위험성이 있는 단발성 작업이나 공사에 대한 현황 관리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수급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침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과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한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25년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통해 도급사업 유형 및 의무 이행 사항을 분류하고 적격수급인평가, 적격 수급인 선정 후속조치, 위험성평가,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안내,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여 도급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적격 수급업체 선정 지침」으로 현행화하는 과정도 검토 바란다.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의 이행수준을 확인한 결과, 기관은 지침에 의거 안전보건방침,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 등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고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를 수행한 도급사업에 대해 계획서와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위험성평가, 안전작업허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항목은 계획을 반영하지 않거나 세부 계획을 미포함하고 있음에도 평가 시 중간 점수 이상을 부여하였고, 평가표 양식이 평가일자 와 평가자, 서명 등 평가 수행 관련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아 평가자별 작성 방법이 상이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입찰단계에서 수급업체에게 제공하는 계획서와 평가표 항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수급업체가 계획서 제출 시 적정 작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기관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을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절차」에 의거 적정 주기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기관의 대표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수급인 대표자가 참석하여 위험요인 협의, 사고사례 공유, 수급업체 지원, 도급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안전보건 관련 내용 안내와 수급인 요청사항 수렴을 통해 안전보건협의체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에 있어, 지침과 관련 법은 도급인 및 수급인 대표자가 모두 참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기관의 대표자(원장)는 4번 참석하였고 나머지는 부원장, 안전팀장이 도급인 대표자로 참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협의체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업장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자가 참석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작업장 일반, 건강관리, 작업환경, 유해위험물, 기계기구, 전기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다만, 활용하고 있는 양식은 '2025년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된 것으로 절차서에 현행화하는 과정을 검토 바라며, 점검장소 및 위치의 기입,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주기적 실시와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 항목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순회점검은 상주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양식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점검일지는 작업장 일반, 전기작업, 유해물질 취급작업, 소방안전의 대분류와 2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양식을 통해 정형화된 방식의 점검 체계를 확보하였다. 다만, 점검표의 항목 구성을 확인한 결과, 작업장 일반에서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와 같은 비정형화된 항목, 소방안전 항목의 중복 여부, 점검장소 및 위치, 점검자의 기록 가능 여부 등 점검표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절차», 「적격 수급업체 선정 지침」 등을 기반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급사업 추진 시 금액에 관계없이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를 적용하며, 계약금액에 따라 평가 주체를 세분화하여 계약 체결 이전 단계부터

안전보건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도급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급업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25년 단기 도급사업인 저수조 청소, 에어컨 청소, 하절기 풀베기 용역 등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급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자체 검토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해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적절한 실행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상주 수급업체 3개소(포이파트너스, 가람푸드, 남도숲)에 대해서는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 안전보건점검과 함께 근로자 의견 수렴, 현장 안전 점검 등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주숲체원장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순회점검과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 작업현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작업 전 혼재작업 확인을 위한 양식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환류를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도급사업 유형(A~D) 구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험작업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환류 체계 구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원에서 진행한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는 수급업체에 보완사항을 통보한 반면, 나주숲체원 자체 평가에서는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적사항이나 보완 요청 없이 도급업체가 선정된 사례는 평가 기준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순회점검과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사용되는 점검표가 동일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어, 수급업체별 작업장 특성이나 위험요인을 반영한 점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각 업체의 작업환경에 맞춘 세분화된 점검 체계가 마련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침에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위생시설 등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은 상주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사고사례 등 다양한 안전보건정보를 공유하고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내 위생시설의 사용 협조를 안내하는 등 수급업체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기관은 상주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교육에 대해 적정 수행 여부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다만, 확인 과정이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직무교육 등 법정 교육에 대해 대상자, 이수자,

미이수자를 작성하여 수급업체가 회신하는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교육일지나 결과서 등 증빙 확인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39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근거하여 기관의 수급업체 작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립횡성숲체원 태양광 LED 가로등 시스템 설치,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저수조 청소,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지붕 데크로드 바닥조명 공사 등 전기·밀폐공간 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관은 해당 위험작업에 대해 특별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나, 계약 단계부터 특별교육 대상 여부 파악과 현황 관리를 통해 특별교육의 적정 이행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은 작업 시작 전 수급업체 작업이 특별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환류하는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란다.

기관은 수급업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휴게시설, 목욕시설, 탈의시설 등 위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절차」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급업체의 요청 시 장소제공 및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 또한, 휴게시설 점검의 근거는 없으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을 확인한 결과 정기적으로 위생시설을 점검하는 등 관리상태는 양호하였다. 다만, 위생시설 전반에 대해 정형화된 절차 확보를 통한 점검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적정 관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관은 위생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업체 근로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공식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은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절차」를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자료 제공, 교육장소 협조 등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 2회에 걸쳐 수급업체에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교육장소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작업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경우 특별교육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25년 4월에 진행된 (주)다우환경의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도급계약의 경우, 밀폐공간 작업으로 분류되어 특별교육 대상이 되었으며,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나주숲체원에 제출하여 확인받는 등 절차에 따른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는 수급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촉진함과 동시에 도급업체로서의 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상대피로, 비상연락망, 작업장 특이사항, 휴게실 및 위생시설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주숲체원의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은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상주 수급업체에게는 사용 안내를 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수급업체에 대해서는 작업 전 구두 안내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휴게시설이나 위생시설의 구체적인 위치나 이용 방법에 대한 자료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중 안전보건 이행 여부는 주 1회 순회점검과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급업체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점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급업체별 특성과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사항 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수급업체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구체성·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와 미흡 사항에 대한 실질적 보완요구 체계 마련 필요
2. 상주·비상주 업체뿐 아니라 단발성 작업·공사까지 포함한 도급사업 현황의 체계적 관리와 수급업체별 작업 특성·위험도를 반영한 점검표·관리항목 정비 필요
3. 특별교육 대상 작업 및 교육 이행의 계약 단계 관리 강화, 단기 수급업체를 포함한 휴게시설·위생시설 지원과 의견수렴의 공식 절차화, 후속조치 및 차기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환류체계 강화 필요

---

##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

###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안전법, 국토안전관리원]

# 1. 작업장 안전관리

##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노동자 및 이용국민이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현장은 작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을 기반으로 작업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은 방문자센터, 체험센터, 강당, 체험실, 휴양관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동통로 확보, 정리정돈 상태, 조도 확보 등 작업환경의 기본적인 안전수준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 청사 주요 지역에는 비상대피 안내도가 부착되어 있어 방문자와 근로자의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기판넬 감전주의, 중량물 취급주의 등 경고표지 부착 상태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시각적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다만 일부 전기판넬에 감전주의 표지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어, 향후 시설 점검 시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소방펌프실 등은 화재, 정전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고위험 작업공간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동과 설비의 안전한 조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해당 구역에는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축전지 내장형 비상조명등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설비 수동조작이 필요한 경우 내부 근로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작업환경 중 근로자 편의와 관련된 부분인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숲체원 소속 직원이 구분하여 각각의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전담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의 온·습도, 조명 상태, 비품 확보 등과 관련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자료가 없어 관리의 체계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 환경 조성을 위해 담당자 지정 및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MSDS 교육은 고객지원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금년도 교육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MSDS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는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현장 내 실제 사용 중인 취급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현장 밀착형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개인보호구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보호구 지급 기준 및 적용 대상 작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안전장비 착용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수급업체와의 안전보건 활동에도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비상발전기실·전기실·소방펌프실 등 고위험 작업공간의 비상조명설비 보완과 감전주의 표지 등 안전표지의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관리 강화 필요
2. 휴게시설의 담당자 지정 및 정기 점검체계 마련을 통한 쾌적성·안전성 관리 강화와 실제 취급물질의 유해성·위험성·취급상 주의사항을 반영한 MSDS 교육의 실효성 제고 필요

## [2]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현장은 매월 1회 ‘안전일터조성의 날’을 지정하여 기관장이 직접 청사를 순회하며 기계·기구 및 설비, 건축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목록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2대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작성 중인 기계·기구 목록표에는 예초기와 컴프레셔만 포함하고 있으며 발전기, 동력운반차 등의 일부 설비가 누락되어 있어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누락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누락된 기계·기구를 목록에 포함시켜 전체 장비가 관리 대상에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발전기의 경우 자체 점검을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안전 전문업체에 의한 분기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업체의 점검 기록만 보유하고 있다. 자체 점검 시에도 점검 일지를 통해 점검 항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예초 작업 시 반입 장비(예초기 등)에 대해서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전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작업허가서 또는 T.B.M 일지에 기록하는 등 검토 절차를 보강하기 바란다.

현장 순회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기관의 「비일상적인 작업 재해예방활동 지침」에 따라 현장은 LOTO 작업 종류와 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실 내 ‘LOTO KIT’가 충분하게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1층 창고 및 1층 저수조실 등 일부 분전반에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폐쇄형 외함으로 설치하거나 시건하는 등 절연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또한, 지하 저수조 내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안전대 등 보호구는 비치되어 있으나, 고소작업 시 이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대 걸이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락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추락방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 저수조 내 고소작업 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예초기·컴프레셔 외 발전기·동력운반차 등 보유 설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계·기구 목록을 전면 정비하고, 모든 장비가 정기 점검·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리체계 보완 필요
2. 발전기 등 설비의 자체 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도록 점검일지 운영이 필요하며, 예초기 등 반입 장비에 대해서도 작업 전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작업허가서 또는 TBM 일지에 반영되도록 관리절차 보완 필요
3. 일부 분전반의 충전부 노출에 대해서는 폐쇄형 외함 설치나 시건 등 절연 조치 강화가 필요하며, 지하 저수조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 걸이설비 등 추락방지용 부착 설비 설치를 통해 고위험 작업의 물리적 안전조치 보강 필요

### [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노동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현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나주숲체원 및 치유의 숲 각각에 대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사무실·체험실·복도·식당·기계실 등 각 공간에 화재 유형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현장 근로자들은 비상시 자신의 역할과 대피로 및 대피장소 등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사 내에서는 경유, 휘발유, LPG 등 일부 인화성 물질을 보유 중이며, 경유와 휘발유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에 경고표지 및 MSDS를 게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LPG는 외부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전도 방지 조치와 시건(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인화성 물질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법적 요구사항도 준수하고 있다.

한편, 현장은 총 4개의(나주 2, 곡성 1, 화순 1) 저수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였다. 본사의 「밀폐공간 안전작업관리 지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각각 수립하여 밀폐공간의 위치 및 유해인자, 보호구 등을 파악하여 현황 관리하고 있다. 밀폐공간 작업 시 현장 감독을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시설담당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반기 1회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대응력을 강화한 점은 적정하다. 다만,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 보유하고 있는 산소농도측정기 1대의 현황이 누락되어 정기적인 관리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검교정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란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T.B.M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작업허가서에 가스농도측정자를 지정 및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작업 시간이 9:00~18:0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스농도측정은 1회만 실시한 것으로 작성되어 실제 해당 작업 현황과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따라서 작업허가서 발행 시 작업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측정자로 지정한 후, 측정 위치 및 시간 등을 준수하여 측정을 시행하고 적정하게 기록 및 관리하기 바란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산소농도측정기 등 밀폐공간 작업 관련 장비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정기 점검·검교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 강화 필요
2.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에 측정자, 작업시간, 측정 위치, 측정 횟수 등 필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실제 작업조건에 맞는 측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수준 제고 필요

## [4]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작업허가서 발급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화기, 고소, 전기취급 등 다양한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와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에어컨 청소 작업 등 두 건에 대해 작업허가서가 발행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 준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서 작성과 사전점검 절차를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세부 항목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 청소 작업과 같이 고소작업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작업허가서에는 이동식 사다리 사용 여부나 안전모 착용 등 고소작업 관련 체크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또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작업의 경우에는 개정 전 양식을 사용하여 가스농도 측정자 기입란이 없었고, 작업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농도 측정이 오전 9시에 한 차례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환경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반복 측정의 중요성을 누락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작업 시작 전은 물론 점심시간 이후 작업 재개 시점에도 추가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작업 중 급박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와 지침서를 통해 작업중지 요청 절차가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중지 요청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나, 동시에 작업중지 제도의 인지도 및 실효성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기관 근로자 및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 요청 절차에 대한 교육·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작업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출장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차량 이용 출장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근로자의 이동 중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업무 특성상 기관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외부 출장 사례가 없어 해당 지침의 실제 적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고소작업·밀폐공간작업 등 위험작업의 특성이 작업허가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체크항목을 보완하고, 가스농도 측정자·측정시점·반복 측정 여부 등 작업 중 안전확보에 필요한 정보의 명확한 기록·관리 필요
2. 작업중지 요청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 실적이 없는 만큼, 기관 근로자와 수급업체 대상 제도 안내·교육 강화와 함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 작업중지 요청이 가능한 현장문화·운영체계 정착 필요

## 2. 시설물 안전관리

### 【1】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보수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의 수립〉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2025년 2월 15일 이전에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 〈시설물관리계획(시설물별) 내 안전점검 법정 기한 준수〉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의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수립하였다.

##### 〈시설물관리계획(총괄) 수립의 적정성〉

기관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 긴급상황 조치체계 및 유지관리계획 작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의 조직·인사 운영과 목표 설정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이 지속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기관은 부사장 직속의 안전총괄팀을 두어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운영, 소방 및 시설·전기 분야 유해·위험요인 점검, 산림복지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조정 등 전사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관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원 경영지원실 총무팀에서 사옥 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산림복지서비스본부 시설조성관리팀에서는 신규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공사 안전,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및 대수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치유원 및 각 숲체원에서는 안전관리팀 또는 고객지원팀 등을 통해 현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은 기관의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관의 중점사업과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원-사업본부-현장 조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시설안전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사규정 운영>

기관은 「전문직위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타 직위와 구분하고, 순환전보 제한을 통해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사규정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시설 조성 담당, 전기·에너지 담당, 수목장림 운영·관리 담당 등의 전문직위를 분류하였다. 또한 안전 및 시설조성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전문직위제 운영 및 자격증 취득 지원에 대한 실적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 노력을 추천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목표 설정>

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내에 중대재해사고 ‘zero’목표를 세워 전사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내에 ‘모든 종사자 및 국민이 안전한 산림복지 실현’을 목표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산림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안전경영책임계획 내에 노사가 함께 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력으로 안전점검 내실화로 인한 산림복지시설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내·외부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한 시설 안전성 확보 등의 성과는 긍정적이다. 성과분석을 통해 시설 특성과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첨단 안전장비(AI·IoT 기술 등) 도입에 대한 미흡점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차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등의 환류를 통해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더 나은 안전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

### [3]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설물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을 보고하여 법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성능평가 실시>

해당없음

##### <안전취약(D·E등급) 및 “중대한결함” 발생 시설물 적정관리>

기관은 2025년 기준 시설물안전법 대상 소관 시설물의 안전취약(D·E등급) 및 “중대한결함” 발생 시설물 없이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서 안전취약(D·E등급) 및 “중대한결함”이 발생한 경우, 긴급 안전조치 및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24조에 따라 법정 기한 내 보수·보강을 착수 및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4】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수준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뉴얼·설계도서와 같은 유지관리 기초자료 확보, 정보시스템 운영, 사고 발생 대응 및 검증체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매뉴얼 보유〉

기관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통합 매뉴얼을 비롯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산불·화재 및 풍수해·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소방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내 시설물 관리 지침을 통해 시설물 관리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추락·끼임 등 유해·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제시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현행 매뉴얼 체계는 재난·안전보건 중심의 대응 및 작업 안전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운영체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안전점검·진단·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주요 절차와 업무주체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재난 대응 중심의 관리체계와 연계된 종합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전수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다.

#### 〈시설물 정보 시스템 운영〉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FMS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시설물관리계획, 점검·진단결과 제출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시스템 사용자 대상 활용 교육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추천한다.

#### 〈시설물 사고 발생 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모의훈련 실시〉

기관은 매년 2회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시나리오별 상황을 부여하고 자위소방대를 구성하는 등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연락망 구축, 예비수송단 확보, 응급대비 물품 구비 및 중대재해 대비체계 마련 등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체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지진·풍수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 사고 발생 시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조직 구성, 역할 및 임무분장, 보고체계 등 실행 중심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합동 소방훈련 외에도 산불, 제설, 밀폐공간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비상사태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다만, 시설물 붕괴 등 소관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관 소관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용벽붕괴 등의 재난유형 확대가 필요하다. 일부 비상사태 대응 훈련의 경우 훈련 실시 후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등 모의훈련 개선·환류 활동이 확인되나, 훈련계획 수립 단계에서 과거 훈련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합동 소방훈련의 경우 개선·환류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환류 체계 구축을 통해 모의훈련의 내실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운영〉

기관은 시설물 전문 점검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순회 안전점검,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합동 특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점검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및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는 확인되지 않아, 점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보수·보강 방안의 타당성 검토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산정되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와 보수·보강 방안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 대상, 위원회 구성, 검증 항목 및 실시 시기 등을 명확히 설정한 검증체계를 규정화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중점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해당없음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수립 필요
2. 시설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
3.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검증체계 규정화 필요

## 【5】 시설물 사고 및 안전성능 수준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후속조치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 사고 발생 및 대응〉

2025년 한 해 동안 시설물 손상 및 장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또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과 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소관 시설물 안전등급〉

기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전 소관 시설물의 안전등급 수준을 양호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6]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내구연한 동안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 <시설물 노후화 대비>

해당없음

#### <보수·보강 이력 관리>

기관은 사용승인(24.12.)이 완료된 2종 용벽 시설물을 신규 소관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도래할 정기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소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규 시설물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실적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기록·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력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 보수·보강 이력관리의 대상, 기준, 방법, 기한 및 미적정 관리 시 조치사항 등을 구체화한 내부 규정의 우선적 개정을 강력히 권고한다.

#### <보수·보강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없음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보수·보강 이력관리의 구체적인 규정(이력관리 대상 용역, 기준, 방법, 주체, 기한, 이행점검 및 미적정 관리에 대한 조치 등) 마련
2. 시설물 보수·보강 이력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7]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담 인력의 전문자격 확보 및 전문교육 이수, 전문기술 적용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 <조직 구성원 전문성 강화>

기관은 작업별 업무 특성·시기·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관계자 전문성 배양을 목적으로 「2025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위험성 평가 사업주,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당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발굴하여 운영하길 추천하며 단편적 교육 운영을 넘어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기반의 교육체계를 수립하길 추천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진안고원 안전·시설 대상자 전문화 교육 실시 실적을 제출하였다. 이는 조직 구성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해당하므로 추후 소관 시설물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길 추천한다. 또한 해당 노력을 통해 전문기술을 발굴하여 실용화하기 위해 시범적용 등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환류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기술 도입 및 개선을 추천한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과정 및 제도개선 노력 필요
2. 전문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 필요

## 【8】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주요 라이프 라인의 기능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 〈시설물 회복 및 복원 소요기간 감축〉

기관은 시설물 화재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통합 매뉴얼, 밀폐공간·산불·화재·풍수해·산사태 대응 매뉴얼 및 소방계획서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각 팀별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 초동 대응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유지하며 관련 매뉴얼·절차·지침서를 운영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상황 인지-보고-초기 대응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초동 대응 체계는 구축하였다.

화재 발생 시 행동 매뉴얼을 기반으로 자위소방대 조직별 임무 수행, 초기 진압 장비 활용, 비상연락망 구축, 예비수송수단 확보, 응급대응 물품 구비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대응·복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초기 피해를 억제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관리 노력은 확인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는 주로 화재 대응 중심의 절차 및 훈련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 복구 소요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 단계별 복구 전략, 복구 우선순위 설정 기준, 복구 성과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방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훈련을 수행하는 등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협력 기반은 일부 구축되어 있으나, 소방서 외의 시설물 회복 및 복원 소요기간 감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및 공동대응 체계는 확인되지 않아, 향후 재난유형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시설이용자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해당없음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시설물 회복 및 복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

## **3 「안전성과」 범주 심사**

---

## 【1】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 수준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개선 이행 심사〉

해당없음

〈개선 이행 노력〉

해당없음

## [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 심사의견

#### 〈안전활동 추진 실적의 적정성〉

기관은 '25년도에 안전보건경영, 작업장 안전, 근로자 및 이용객 안전, 건설 및 도급사업 안전, 연구시설 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총 12개 추진과제를 수행하였고, 각 실행과제를 추진배경-추진내용-주요성과 구조로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였다. 특히 안전보건경영 분야에서는 노·사 합동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안전전담 조직 기능 강화(조직 개편·정원 증원), 안전 관련 위원회 정례화 및 운영 내실화, 경영진-안전보건관계자 간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거버넌스 기반 안전경영 체계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이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ISO 45001 국제규격으로 전환하고, 전 소속기관(9개소) 운영지원·교차 내부심사·시정조치 및 문서(매뉴얼·절차·지침) 정비 등을 추진하여 P-D-C-A 기반 운영 역량을 제도적으로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

작업장 안전 분야에서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을 위해 주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全) 단계 근로자 참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행력과 참여 기반을 강화한 점이 강점이다. 더불어 경영진 수시 점검, 내·외부 전문가 참여 합동점검반 운영, '안전일터 조성의 날' 추진 등을 통해 현장 작동성 제고를 도모한 점이 돋보인다. 아울러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 고도화, 모의훈련 및 스마트 심폐소생술 교육,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구축·운영 등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체계화하고, 재난 인명피해 0건을 성과로 제시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로자·이용객 안전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사례 중심) 운영, 체득형 소방·재난 체험교육, 교통안전 맞춤형교육 등을 통해 교육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였고, 교육 참여·이수율 100%를 성과로 제시하였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보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함께, 안전문화 협력 네트워크 운영, 안전패키지 추진, 캠페인·공모전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시도한 점도 고무적이며, 안전인식 설문 84.9점(우수) 및 안전패키지 만족도 99.6점(최고수준) 등 정량 결과를 병기해 설득력을 높였다.

건설·도급사업 안전 분야에서는 상시 위험성평가 및 TBM 활성화, 발주공사

점검체계(주간/월간/분기/반기) 구조화,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및 숲체원 조성사업 중대재해 'Zero' 준공 등을 성과로 제시하였고, 도급사업장에서는 체크리스트 의무화, 이행점검, 표준 교안 제공 등 상생협력 기반을 보완하여 수급인 재해 2건→1건 감소를 성과로 제시한 점이 긍정적이다. 연구시설 안전 분야에서도 고압가스 안전점검 및 표시체계(색상 코딩·방향 표시), MSDS 게시·현행화, 비상대응 훈련 및 장비·PPE 정기점검 등 위험원(가스) 중심의 관리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본 항목은 단순 실적 나열이 아니라 안전경영책임계획(Plan) 대비 책임보고서(Do/Check/Action)의 정합성을 토대로 이행수준·달성도·환류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계획-보고 간 연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성과관리의 객관성과 환류 체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서류 확인 결과, 책임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 중 일부(예: 2-2, 3-3)가 책임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계획 대비 이행수준을 일관된 체계로 판단하기 어렵고, 과제 누락·재구성에 대한 사유 및 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계획-실행-점검의 연결 고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보고서상 성과가 제시되더라도, 계획 대비 성과를 평가하는 데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책임계획 단계에서 과제별로 설정된 성과목표(지표·목표치)가 보고서 단계에서 달성수준으로 추적·관리되지 않고, 목표 대비 실적(달성률)과 그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Action)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보고서가 “활동 수행 여부” 중심으로 정리되면서, 미진·미달성 항목에 대해 왜 미진했는지(원인), 무엇을 바꿀지(개선대책), 누가 언제까지(책임·기한) 이행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차년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이어지는 환류 기록이 부족하여 PDCA의 Check-Action 단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향후에는 (1) 책임계획-책임보고서 과제 매핑표를 통해 과제별 1:1 대응관계를 명확히 하고, 누락·변경·신설이 있는 경우 근거와 사유(조직·환경 변화, 법·제도 변화, 사업 여건 변화 등)를 문서화하며, (2) 과제별 성과목표(지표·목표치)를 기준으로 실적·달성률·미진 사유를 점검하고, (3) 미진 항목에 대해 개선대책-책임부서-기한-재점검 결과까지 포함한 Action 중심의 환류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 실적 제시를 넘어 계획 대비 성과의 평가 가능성을 높이고, 차년도 개선·고도화(Plan으로의 환류)가 담보되는 성과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권고된다.

###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기관은 임원 안전활동에 대해 사망사고 “0건”,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지원, 종합 재난상황실 운영, 법정 의무 이행점검, ‘안전일터 조성의 날’ 참여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목표-실적을 제시하여 성과측정 체계를 운영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전담조직의 안전활동에 대해서도 ISO 45001 인증(10개소), 직무교육·관리감독자 교육, 작업환경측정,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등 주요 지표를 항목화하여 목표 대비 달성도를 제시(모두 100%)함으로써 성과관리 결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과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를 일정 수준 확보하였다.

아울러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안전 분야 지표(예: 안전사고, 안전활동 현장평가)를 조직 내부평가에 반영하여 보수 및 인사고과에 연계한다고 명시하고, 전년 대비 계량점수를 상향한 점은 제도적 정착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안전보건 우수기관(횡성, 장성) 선정·포상, 안전보건관리 5대 활동(안전신고·아차사고·안전점검·안전문화활동·안전보건교육) 참여 실적 기반의 우수 직원·담당자 포상 운영 등은 구성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참여 촉진형 성과관리’ 장치로서 제도 설계 측면의 강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본 항목의 핵심은 임원 등(경영진·보직자·조직)의 안전활동에 대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된 결과를 인사평가·성과급 등 보상체계에 연계하여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현 단계에서는 성과측정 대상이 진흥원장(이사장)과 부원장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주요 보직자까지 포함한 ‘임원 등’ 전반의 성과관리 체계로 확대·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 근거”가 비교적 일반·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지표 및 목표치 산정의 구체적 근거(최근 사고·재해 추이, 핵심 위험요인 진단 결과, 전년도 미진 사항, 외부 평가·감사 지적사항 등)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점은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다수 지표가 법정 의무 또는 통상 수행 수준에 해당하거나 목표가 과소 설정될 경우 달성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변별력과 개선 유도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전담조직 성과를 포함해 “100% 달성” 중심으로 제시된 결과는 가시성 측면의 장점은 있으나, 미진 요인 도출-원인분석-개선대책-재점검으로 이어지는 Action(시정·예방조치) 및 환류의 실효성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마일리지·포상 운영에서 포상 인원(2인)과 포상 규모(20만원/10만원)가 제한적이어서 전사 확산과 참여 유인 측면에서 추가 보완 여지가 있다.

#### 〈안전경영책임 활동에 대한 자체심사(Audit) 실시〉

기관은 자체심사(Audit)를 반기 단위로 운영하며 일정 수준의 점검·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 안전보건활동 전반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내부 점검을 수행해 온 점은 긍정적이다. 즉, 자체심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관리하려는 제도 운영 의지는 확인된다.

다만, 본 항목의 핵심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및 구성원 공유를 통해 환류시키는 데 있다. 현재 보고서 내용은 책임계획의 추진과제·세부 목표를 기준으로 자체심사를 설계·수행했다기보다는, 기관이 계획·이행·점검·환류한

안전보건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형태에 가까워, '책임계획 이행 자체심사(계획 수립-이행-시정조치-공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또한 자체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심사 전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보장과 평가 주체의 독립성 확보(예: 외부 전문가 참여, 교차심사 등)를 어떻게 담보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자체심사 결과가 우수하다고 도출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우수한 성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심사 범위·기준·방법의 깊이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

따라서 향후에는 (1) 자체심사 항목을 책임계획의 추진과제 및 세부 목표·지표와 1:1로 매칭하여 감사범위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2) 경미 사항이라도 개선 필요사항 도출-시정조치-재점검-공유가 기록으로 남도록 Action을 실질화하며, (3) 외부 전문가 참여 또는 타부서/현장 교차심사 등을 제도화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자체심사 결과가 차년도 계획 수립의 근거로 환류되어 계획의 내실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본 항목의 핵심 개선 방향이다.

####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실적에 대한 주무부처 점검 및 후속조치 계획수립 여부〉

기관은 '25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실적에 대한 주무부처(산림청) 점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주무부처가 별도의 이견이나 지적·권고사항 없이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기타사항〉

기관의 현장 확인 결과 보행안전(넘어짐·미끄러짐·전도) 위험 저감과 비상대응·PPE 관리의 실행력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였다. 먼저 엘리베이터 출입구는 문턱 단차로 인한 넘어짐 위험이 확인되었고, 해당 사항이 위험성평가에서 이미 개선과제로 도출되었음에도 미이행(잔여 1건) 상태인 만큼, 단차 저감(구조 보완)과 문턱 시인성 강화(표시·표면 처리)를 조속히 완료한 뒤 재점검을 통해 종결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숲길/데크 구간은 미끄럼방지 패드가 평면 위주로 설치되어 경사로 취약구간의 미끄럼 위험이 상대적으로 잔존하는 바, 법적 의무 기준(경사 15도 초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천·동절기 위험을 고려하여 주요 동선 및 취약 경사로에 우선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데크의 바닥조명 고정 불량이나 다수 확인되어 보행 중 걸림·전도 및 설비 파손 위험이 우려되므로, 고정·보강 조치와 함께 정기점검 항목에 반영하여 재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추락·독층·넘어짐 등 위험 경고 표지판의 노후화/소형화로 인한 시인성 저하가 확인되어, 표지 보수·교체 및 취약구간 중심의 설치 수량 확대·배치 최적화가 요구되며,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표준화된 비상연락망 안내(연락처·위치정보·신고절차)를 주요 출입구와 동선, 시설 인접 구간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당 구역은 바닥 물기 다량으로 인한 미끄러짐 위험이 높아 보여, 배수·청소 동선 개선, 미끄럼방지 매트/코팅, '젖은 바닥' 경고표지 상시

운영 등 즉시 가능한 조치를 포함해 관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보호구(PPE)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보호구가 개인 지급되지 않아 공용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보호 수준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예산(안전관리비) 추경 등 재원 확보를 통해 종사자 전원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함 보관 및 지급대장 운영 등 기존 지침의 이행 여부를 사업장 단위로 점검·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호구 선정의 적정성(업무·위험요인 기반), 지급 시기 준수, 교체 주기 관리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지사(사업장) 안전관리조직의 운영 수준을 전사 차원에서 수평 점검하고 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시정조치·재점검으로 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권고된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경영책임보고서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과제·지표·목표치, 실적·달성률·미진 사유·개선대책이 1:1로 명확히 연결되도록 정비하고, 과제 누락·변경 사유 명확화와 미진 항목에 대한 책임부서·기한·재점검 중심의 환류체계 강화 필요
2. 임원 등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대상을 주요 보직자까지 확대하고 지표 설정 근거와 변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체심사도 책임계획의 추진과제·세부목표와 직접 연계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독립성·전문성 강화 필요

### [3]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대국민,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 <기관이 종사자를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기관이 실시한 '2024년 근로자 안전인식 수준 진단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문화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설문조사의 경우 정원 약 500여명 중에 227명(약 50%)이 참여했다. 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안전교육, 문화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안전경영, 안전보건환경 수준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해당 내용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안전보건활동 내용에 수립하였다.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참여율을 정하여 목표에 도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설이 산림지역에 위치한 위험 특성에 따라 '시니어 산림복지 서비스 안전지기'를 산림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대와 그 외 시간(자율시간대)에 배치하여 숲에서 현장체험하는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안전시설물의 대한 점검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모니터링 개념으로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시니어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며, 연령대를 고려하여 보건관리 사항 고려가 필요하다.

기관 종사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안전보건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직원 참여(기관 표창) 승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율을 확대하고 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EAP 지원 및 본원에서 가로세로 안전 낱말 퀴즈를 자체제작하여 기관의 주요 사항들을 쉽고 유익하게 접근한 우수사례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들을 더 확대하여 안전보건활동에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안전점검 개선사례 등을 공유하여 안전활동 점검 회의를 소속기관별 안전관리자 및 부서장(관리감독자)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장)가 확인하고 있다. 안전보건 문화 네트워크 참여 기관 내 신청자에 대해서 포상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관리감독자가 종사자들에게 내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침 개선과 확인 활동이 필요하다.

### 〈기관이 대국민(종사자 제외)을 위해 추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기관의 주요 안전문화 확산의 대한 노력을 현장검증 한 결과 감정노동자 및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힐링포레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9명에 대해서 치유형 숲체험과 숲속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판단되며 취약 근로자에 대한 심신안정 및 위로를 독려하는 대표 대국민 확산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추후 확대하여 환경오염 피해주민들에 대한 동일 프로그램 운영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국가에서 지정되는 식목일, 산림청 산불조심기간 봄철, 가을철, 지진, 풍수해, 명절, 계절별 특화점검 시기에 맞춰 각 기관별로 안전점검계획을 본원과 함께 이행하였다. 기관별 안전보건 문제점에 대한 조치 대응 사항을 합동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정기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환류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캠페인을 연계하여 매체를 통해 또는 방문하는 대국민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10개소에 대한 안전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분야별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컨설팅, 안전물품 제공을 하여 상생협력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안전점검 우수사항 35건, 개선사항 46건을 발굴하여 유사업종에 대한 위험요소 점검지원을 통해 상생협력하여 산림분야에 특성화된 안전문화를 확산 중이다. 지속적으로 업무협약 등을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안전문화 확산 활동 노력(①과②)에 따른 성과〉

기관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노력이 여러 방법으로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동종 사립 기관 안전물품 지원을 통한 상생, 종사자들에게 쉬운 접근성 유도를 위한 가로세로 낱말 퀴즈, 안전패키지 지원 같은 내용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관 종사자에 대한 포상이 극소수에 해당되어 이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부처에 홍보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대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면 기관의 특화 성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개선 필요사항 요약】

1. 안전인식 조사, 안전보건마일리지, 안전문화 네트워크 등 종사자 대상 프로그램의 참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감독자를 통한 내용 확산과 참여 독려 등 운영 강화 필요
2. 힐링포레스트 프로그램, 안전패키지 지원, 계절별 안전점검 연계 활동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대국민 안전문화 사업의 캠페인·홍보 연계 강화와 민간 산림복지 제공자·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및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

###### 〈사고사망 예방 실적〉

기관은 2025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 〈사고사망 감소 성과〉

기관의 사고사망 승인은 심사 대상연도 직전 3년('22년~'24년) 평균 0명에서, '25년 0명으로 동일하였다.

###### 〈사고사망 대응 노력도〉

해당없음